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범칙금 미납 등으로 즉결심판이 청구되었으나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근거 마련〉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87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병도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4. 11. 29.
3. 회부연월일 : 2024. 1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40일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 규칙은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의 근거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고, 2019년부터는 해당 규칙에 근거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2020년 이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미납액이 연간 약 5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미납률 개선 및 징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여 교통법규 준수 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항제24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제165조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람이 즉결심판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illegible]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 23. (생략) <신설>	1. ~ 23. (현행과 같음) 24. 제165조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람이 즉결심판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각 호 또는 제157조(벌칙)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¹⁾을 할 수 있지만, 같은 항 제1호

1)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절차에 갈음하여 행정관청이 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일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소추를 면하게 하는 것임.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검색(<https://www.klri.re.kr/kor/business/bizLawDic.do?seq=804>)

통고처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통고처분의 이행 여부가 당사자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점, 승복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법원에 의한 정식재판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점, 비범죄화 정신에 근접한 통고처분의 제도적 의의 등을 종합할 때, 통고처분 제도의 근거규정인 도로교통법 제 118조 본문이 적법절차원칙이나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함(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275 결정)

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즉결심판²⁾을 청구해야 함. 그리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1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지만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함³⁾.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99조제3항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후 즉결심판 최고를 받았음에도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아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람의 운전면허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⁴⁾.

2) 즉결심판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임. 즉결심판의 절차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3)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경찰청은 2019년부터 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즉결심판 불응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⁵⁾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4)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현장즉결심판대상자”라 한다)에게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급하거나 발송하여야 한다.
- 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현장즉결심판대상자에게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다시 정한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 ③ 시·도경찰청장은 제2항의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④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9조(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고처분불이행자”라 한다)에게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법 제164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낼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범칙금등(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운전면허번호
 2.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3. 범칙금의 액수 및 납부기한
 4. 통고처분 연월일
 5. 즉결심판 출석 일시·장소
- ②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범칙금등을 낼 경우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사실
- ③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를 다시 정하여 지체 없이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시·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⑤ 범칙금등의 납부 및 수납 등에 관하여는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98조제4항을 준용한다.

5) 대전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5구단238 판결(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대전지방법원 2015.5.29. 선고 2015구단23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다. 판단 1) 도로교통법상 즉결심판청구 (생략) 2) 즉결심판 출석통지 및 최고에 따른 기일 불출석 - 운전면허 취소·정지사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는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사유 중 하나로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
--

개정안을 통해 즉결심판을 청구받은 사람이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제157조를 위반한 피고인의 즉결심판 출석률을 높임으로써, 즉결심판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도로교통법」 상의 통고처분은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즉결심판 절차는 통고처분에 승복하지 않은 당사자가 법원에 의한 정식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⁶⁾에서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의 정식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즉결심판 불출석을 운전면허 취소·정지라는 불이익한 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제1항에서는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즉결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정⁷⁾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결심판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명문으로 당사자에게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출석통지 및 최고한 기일에 출석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경찰서장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할 명령 또는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단지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2호가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 규정은 통고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 법원에 의한 정식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당사자의 출석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요건도 아니므로, 동 규정을 같은 항 본문의 “경찰서장은 (중간 생략)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문구만으로 당사자에게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출석통지 및 최고한 기일에 출석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거나, 경찰서장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할 명령 또는 처분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출석통지 및 최고한 기일에 통고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속행위인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른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뿐이고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가 정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재량권 일탈·남용(생략)

6) 헌법재판소 20013. 10. 30. 선고 2002헌마275 결정

즉결심판의 진행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⁸⁾ 반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피고인의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과도한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범칙금 미납에 대한 적절한 제재 수단이 없어 ‘범칙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은 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345

7)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불출석심판)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被告人등”이라 한다)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8) 경찰청에 따르면 즉결심판에 불출석 시 원칙적으로 불개정심판(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됨.